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<u>배재학당(배재대학교)</u>의 <u>2017</u>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<u>배재학당(배재대학교)</u>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ㆍ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〈지적사항 없는 경우
	건수	금 액	지적사항(건)	: 지적사항 없음(표기)〉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•	•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•	•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•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해	당	없	<u>о</u> п
계				

붙임: 1. 학교법인 배재학당(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
2. 배재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8년 5월 일

학교법인 배 재 학 당

감사 유 하 정 (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

감사 한 백 현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003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2018년 5월

피감사 기관장

일

2018년 5월

학교법인 배제학당

이사장 곽 등

피감사 기관장

배재대학교총장 김영호

